



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APR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목 차

- 무역관련 공통 ISSUE -

· (FTA) -----3page

· (중소기업) -----6page

· (기타) -----9page

- 업계별 ISSUE -

· (철강) -----15page

· (기계·기기) -----17page

· (수산물) -----18page

FTA



관세청, 인도네시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합의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 5 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 회의(왼쪽부터) 싱글윈도우 사무처장, 무역부국장,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은 AEO MRA 체결을 위한 세부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세계일보)

★ KCC 1 분강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이란 양당사국 관세청간에 기관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전자교환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아세안국가의 경우 국가별 세관의 처리방식 및 기준이 상이하да보니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으나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많은 좋은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중국, 3 월 25 일부터 전자 원산지증명서(e-C/O)발행

3 월 25 일부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전자적 발급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도 병행 및 유지한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은 중국 해관총서가 업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통관비용을 낮추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자가인쇄개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동향 등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해관총서는 3 월 25 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Paper C/O)는 발급기관이 서명 및 인장 날인해 교부하는 방식이었으나 바뀐 전자 원산지증명서(e-C/O)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및 인장 날인된 포맷을 직접 인쇄하는 방식이다.

인쇄가능한 원산지증명서 종류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재수출증명서, 가공증명서 등 15 가지로 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e-C/O 의 주요 특징을 안내하며 기존 종이 원산지증명서 서식과의 차이로 인한 진위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13 번란(Exporter Declaration) 및 14 번란(Certification)의 관인.서명이 인쇄된 상태
e-C/O 원본을 복사하는 경우 복사방지 코드가 표시 · 중국해관총서 발급 C/O : Copy(복사)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발급 C/O : Forge(위조)
e-C/O 우측 상단의 QR 코드 스캔하여 원산지증명서 정보 및 확인사이트 조회 가능
프린터 기종에 따라 음영색 등이 상이할 수 있으나 진본임을 의심할 여지 없음 (진위성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www.origin.customs.gov.cn 또는 http://check.ccpiteco.net 에서 진위여부를 조회하거나 담당자 문의를 통해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중소기업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활용도가 부진하였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세계일보)



일시적 자금난 처한 중소기업에 분할납부 허용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최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도 없애는 등 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 및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관세청은 3월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납부기한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올 7월부터는 수입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수입시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 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도 활성화 한다. 그동안 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됐음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기산업 및 재난지역에 있는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는 관세조사를 유예 또는 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시한다.

【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요약) 】

구분		기존(2018년)	개편(2019년)
납기 연장 · 분할 납부	중소 제조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세액)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 (과태료) 최대 9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 연장 · 분할납부 ○ (추징세액)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세액)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 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지원 ○ (과태료)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 연장 · 분할납부 ○ (추징세액) <좌동>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도 제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정비 - 추징 시 이용 안내문 제공
조세 납부 유예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납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이 원칙 * 현행 신용담보업체인 대기업 위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납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제공 없이 이용 * 2019년 7월 개정 「환특법」 시행 예정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 집행(납세자 신청 의존)으로 활용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이 찾아가서 수혜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활용방법 안내
환급 지원	환급금 찾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 중심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협업해 세관이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납품한 중소기업에 제공해 환급 신청
	간이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4,46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 4,486개(+17)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정보 안내, 자동환급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시행)
체납자 회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처분 · 체납정보 제공 유예 ○ 일시 체납자 분할납부 취소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시행) ○ (계속 시행) 	
위기산업 및 재난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연장 등 대상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납기연장 등 구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1회 이상 (+) 또는 매출액 3년 연속 증가 -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연장 등 대상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납기연장 · 분납 구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유예 및 환급 특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시행)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미술품은 관세 면제... '작품 - 상품'

헛갈리는 현대미술품 세금 재판도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던가. 하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백성들이 살기 어렵다고 해도 정부는 호황이다. 2018년 목표액 268조 1000억 원보다 25조 4000억 원을 더 거둬 총 국세수입이 293조 6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결과를 놓고 보면 경기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공연히 죽는소리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하나 정부는 초과징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을 더 걷을 묘수 짜내기에 열중이다.

미술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합의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술품을 인류의 문화적 자산이자 문명적 증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술품 특히 현대미술품은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는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 이는 통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 때문이겠지만 한편으론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사실 전문가도 가끔은 생경해 과연 이게 미술품일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외국에선 미술품으로 인정하는 예술사건이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의 빈티지 가구에 관세가 부과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관세가 부과된 실소를 금치 못할 대표적인 일은 1926년 미국에서 있었던 오늘날 현대조각의 거장으로 미술사에 등재된 콘스탄틴 브란쿠시(Constantin Brancusi·1876~1957)의 '우주 속의 새' 때문에 발생했다. 1926년 11월 뉴욕의 브뤼멜화랑(Brummell Gallery)에서 기획한 전시를 위해 마르셀 뒤샹이 뉴욕에 도착했다. 세관은 광을 낸 금속프로펠러 모양의 기계 부품이라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고 화랑은 조각이라고 주장해 재판 끝에 1928년 결국 예술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각이란 법에 의하면 "조소 작품은 조각이나 주조에 의해 자연물을

모조, 모방 또는 인간의 형태로 복제한 것"을 의미했다. 당연히 브란쿠시의 단순하게 군더더기를 제거한 새 모양은 새와 닮지 않아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

사실 엄청나게 변한 미술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미 1892년 수입된 스테인드글라스를 두고 창문이나 예술품이냐를 따졌다. 또 그리스 조각을 복제한 것도 예술과 제품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가장 모던한 미학에 바탕을 두고 대상을 단순화·추상화한 브란쿠시의 이 작품을 미술품으로 인정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튼 작품은 전시 후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티헨(Edward Steichen·1879~1973)이 구입했고 1980년 존 앤 메리 셸리의 손을 거쳐 시애틀미술관에 기증했다. 재판은 현대 예술의 가장 특별한 속성인 '추상성'을 합법화했다. 이후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은 사물이나 자연물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백남준, 김수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TV와 VCR, DVD가 가전제품이나 상품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다. 1991년 서울 인공갤러리는 전시를 위해 도널드 저드(Donald Judd·1928~1994)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각형 상자 모양의 작품을 반입했다가 산업용 제품으로 판정받았다. 결국 미국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기록과 도록을 가지고 설명 끝에 무사히 통관을 완료했다. 성철 스님(1912~1993)의 사리 봉안을 위해 일본 금세공장인에게 제작 의뢰했던 금동사리함도 법정 다툼을 벌여 미술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WTO 가입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품목을 규정한 관세품목분류표에 의하면 미술품과 표본, 골동품, 우표 역시 면세품목이다. 하지만 미술품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먼저 관세를 내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낭비를 반복해 왔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관세청에 미술전문가와 관세전문가로 구성된 '미술품 판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출처:문화일보)



무협 "캄보디아, 임금 낮고 수출관세 낮아 투자처로 유망"

캄보디아가 우리 기업의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3 무(無)·3 저(低)'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아세안의 기대주, 캄보디아에서 찾는 수출 기회'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해외자본 규제, 환 리스크, 투자적격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수입관세가 없다. 임금, 평균 인구 연령, 수출관세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캄보디아 '국민음료'로 불리는 박카스 광고가 보인다./조선일보 DB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 규제도 거의 없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신고와 동시에 투자가 자동 허용된다. 외국기업의 100% 출자도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가 자국 화폐로 대체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진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리스크 부담이 없다.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투자적격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면 최대 9년간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관세,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올해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월

182 달러(20 만 7000 원)로, 인접 국가인 태국의 60% 수준이다. 인구 절반이 25 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아세안 최고 수준이다.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으로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는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잠재력을 알아본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이 앞다퉀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2017 년 한국의 캄보디아 고정자산 투자액은 1 억 5000 만달러로 중국(14 억 4000 만 달러)과 싱가포르(2 억 5000 만 달러)에 이어 세번째였다.

캄보디아가 2010 년부터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한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화장품, 식음료,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다. 캄보디아 '국민음료'로 자리잡은 동아 ST 의 박카스를 필두로 음료 수출이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음료 수출 3 위(2018 년 기준) 대상국이 됐다.

심혜정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캄보디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 취약한 인프라, 서방국가와의 정치적 갈등 등 투자 리스크도 있는 만큼 잠재력과 한계를 꼼꼼히 따지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

★ KCC 1 분강의

아세안의 기대주가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전세계 시장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 공장을 설립하여 그곳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제 투자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으며 다음 기대국가로 캄보디아가 부상하고 있으니 해외투자를 고민중이라면 캄보디아를 후보지로 고려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정부 "수출계약서 믿고 대출하라"...불안한 은행들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 등만 갖고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가운데, 대출 집행 당사자인 시중은행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수출현장 특성상 계약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수출기업이 수입기업과 짜고 계약서를 꾸며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제 2의 모뉴엘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특별 지침을 마련해 1000 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 갖고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준다. 또 수출 선적 이후 6개월가량 걸리던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1 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보험·보증, 대출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실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여전히 악용 소지가 많은 정책'이라며 무역금융 집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출계약서를 쓴 다음에도 얼마든지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고, 수출기업이 수입기업과 짜고 계약 내용을 부풀릴 수도 있다"며 "마음먹고 사기를 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2014년 모뉴엘 사태를 통해 배웠고, 최근 무역금융이 쪼그라든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4년 모뉴엘은 전자제품 120만대를 1대당 250만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년간 3조원 넘는 사기 대출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 사태로 2014년 3조원에 달했던 무역금융 규모는 작년에 9000억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은행에게 통관 확인 의무를 부과해 가짜 수출 계약서로 인한 '제 2의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한국에서 물건이 나가는걸 확인하는 것보다 물건이 정상적으로 수입기업에 들어갔는지, 수입기업이 수출기업에 대금을 제대로 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통관 확인 의무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심사와 집행은 은행의 고유 권한인데, 자꾸 특별보증이란 제도를 만들어 은행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도 대출을 내주도록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런 제도는 결국 부실 책임에 대한 은행과 무보의 싸움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만큼,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은행간 실적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 문턱을 낮춰 수출 활력을 되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 2 모뉴엘 사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 대출 사후 관리를 보다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뭉텅이로 돈을 빌린 뒤 기업이 여러 곳에 나눠 자금을 사용했지만, 이번엔 기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에 대출금이 직접 투입됐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또한 무보를 통해 수출입기업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

철강



대만 및 이태리산 STS Bar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중인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기재부는 애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였던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 스틸바(HSK 제 7222.11-0000 호, 제 7222.19-0000 호, 제 7222.20-0000 호, 제 7222.30-0000 호에 해당하는 것)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두께 25mm 이상 150mm 이하, 너비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이다. 다만 이 중에서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것,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 인 것, 자동차 엔진벨브용 내열강으로써 EN 규격 X50CrMnNiNbN21-9(21-4NNbW)에 따른 것,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써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라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관세율(%)
대만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68
	지엠티씨(Gloria Material Technology Cor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6
	그 밖의 공급자	13.27
이탈리아	발브루나(Acciaierie Valbruna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2
	코네(Cogne Acciai Speciali S.p.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08
	그 밖의 공급자	12.05

※ 부과기간 : 2019년 3월 16일 ~ 2019년 5월 15일(2개월)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무역위 "한국산 대형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 연장 안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3년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ITC는 2012년 12월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 시장에서 저가 판매된다며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2013년 2월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했다. 적용 대상은 가정용 대형 세탁기다.

ITC는 이날 표결에서 위원장과 4명의 위원 등 5명이 모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적용됐던 덤핑 마진율은 9.29~82.41%, 상계관세 마진율은 0.01~72.31%다.

미국은 ▲수입 상품이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 내에 판매되거나 팔릴 가능성이 있고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을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다. ITC가 판단하면 상무부가 관세를 산정한다.

이번 결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법에 근거한 '일몰 심사'에 따른 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를 매기면 5년 후 재검토해 부과를 폐지하거나 지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ITC는 작년 1월 일몰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해 4월 공청회를 포함한 '전면 검토'(full review)를하기로 한 뒤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관세 부담을 덜게 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는 작년 2월 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는 별개다. 세이프가드는 교역의 불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진입을 원천 제한하는 조치다.

(출처:연합뉴스)



국내 식용금지 기름치, 해외에선 식용 유통돼

‘냉동 어류(제 3 류)’에 분류

일명 ‘기름치’라 불리는 기름갈치꼬치(Oil Fish)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기름 성분 때문에 2012 년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됐다. 한때 일부 음식점에서 메로구이로 둔갑시켜 판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기름치를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처럼 기름치는 국내에선 식용으로 금지된 종이지만, 국제적으론 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제 5 류)’가 아닌 ‘냉동한 기타 어류(제 3 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2 월 19 일 열린 ‘2019 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름갈치꼬치 등 3 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2 월 25 일 전국 세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등에 알렸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기름치를 제 3 류의 제외규정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제 5 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쟁점물품은 기름치를 냉동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

위원회는 관세율표 제 3 류 주 제 1 호 다목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를 제 5 류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품이 제 3 류의 식용에 적합한 어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기름치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유통되는 어종이며, 국내에서도 2012 년 이전까지 식품으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기름치가 일부 지역에서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해당 어종에 대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내에서 2012 년에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것은 섭취 시 급성 소화기계 장애(복통, 설사 등)를 일으키고, 다른 어종(참치나 메로)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다고 해서 기름치 자체를 그 종(種)으로 봐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여전히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를 위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품목번호가 결정되는 품목분류 체계에서는 해당 물품이 제 3 류의 제외규정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율표 제 0303 호에는 '냉동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 0302 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제 0302 호 해설서에서는 "이것은 통째로 된 것·머리가 없는 것·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쟁점물품의 경우 제 3 류의 냉동한 기타 어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라 HSK 제 0303.89-9099 호에 분류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자동차 공기조절시스템 교체용 필터(HSK 제 8421.39-9099 호), 자동차 안전벨트 리트랙터 조립물품(HSK 제 8708. 29-0000 호) 등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 2019 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요약 】

품명	결정세번(HSK)
Oilfish, frozen[기름갈치꼬치(기름치), 학명 : Ruvettus pretiosus]	0303.89-9099
FILTER, HEPA ; MS2(1059333-00-D)	8421.39-9099
CE SPOOL 110601 ; 1110601-AD0	8708.29-0000

(출처:한국관세무역개발원)